

자체평가운영규정

제정 : 2009.09.22

개정 : 2011.07.11

개정 : 2011.11.22

개정 : 2014.11.01

개정 : 2020.03.01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2.10.01

개정 : 2023.10.16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에 따라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이라 한다)의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대학교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·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교 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11.22., 2021.12.01.>

제2조(평가원칙) 평가는 객관성·공정성·신뢰성이 있어야 한다.

제3조(평가대상) 평가대상은 본 대학교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하며,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요소에 대한 지표값을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01.>

제4조(평가영역)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11.01.>

1. 교육·연구 영역
2. 조직·운영 영역
3. 시설·설비 영역
4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

제5조(항목별 평가)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,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, 항목별 평가등급은 전담조직에서 개발하여 총장에게 보고 후 결정한다. <개정 2014.11. 01.>

제6조(평가시기) 자체평가는 1년 1회 이상 실시하되 평가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대학운영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경우와 대학발전계획의 연차별 성과평가보고는 해당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1.12.01.>

제2장 평가기구

제7조 (평가관) ① 자체평가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, 전담조직은 미래전략처로 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② <삭제 2014.11.01.>

③ 전담조직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11.01.>

1. 자체평가업무 총괄
2. 자체평가 역량향상
3. 평가결과의 공시 및 대학교발전계획 반영
4. 자체평가 영역 및 반영비율 개발
5. <삭제 2014.11.01.>

④ <삭제 2014.11.01.>

제8조 (자체평가위원회)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. 평가위원은 내부위원으로 기관평가인증 자체평가위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, 나머지 인원은 자체평가 관련 경험이 있는 자로 위원장이 선임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1.12.01., 2023.10.16.>

③ 위원장은 미래전략처장으로 하며,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07.11.,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1.12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학교자체평가 심사
2. 대학자체평가보고서 작성 <개정 2014.11.01.>
3. 평가위원회 운영

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, 재적위원 1/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 (회의록)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으며,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10조 (간사)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11조 (실무위원회) 자체평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평가영역별 실무위원회를 둘

수 있다.

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

제12조 (평가계획 수립) 전담조직은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, 평가계획을 행정부서 및 학부(과)에 통지한다. <개정 2014.11.01.>

제13조 (평가자료 제출)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행정부서 및 학부(과)는 전담조직에 평가 자료를 제출한다. <개정 2014.11.01.>

제14조 (평가실시) ① 전담조직에서는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한다. <개정 2014.11.01.>
② 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.

제15조 (실사) 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부서 및 학부(과)에 실사를 할 수 있다.

제16조 (평가결과 보고) 평가관은 작성한 평가 자료와 행정부서 및 학부(과)의 서류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는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